

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8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09월 23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지방의회 의원의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협치행정의 구현을 위해 위원회 초과 및 연임위축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서울특별시 시의원을 제외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3개 위원회 초과 및 6년 초과 위원 연임위축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시의원을 삭제함(안 제8조제3항제1호).

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·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“산하기관”을 각각 “직속기관 및 사업소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위원회“란 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(이하 “시“라 한다)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

제4조 중 “시와 그”를 “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와 시”로 하고, “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, 제9조의2를 제10조의2조로 하고, 제10조부터 제16조 까지를 제11조부터 제17조로까지로 하며 제9조와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(청렴서약서 제출) 위원은 심의·의결 시 별지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종전의 제9조) 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제10조의2(종전의 제9조의2)제3항 중 “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15일”을 “7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장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라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종전의 제15조) 중 “제13조제2항”을 “제1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 중복 위촉·연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시의원이 3개 위원회(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

경우에는 2개)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
연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
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·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위원회”란 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제3조(기본원칙) ① 시장 및 시 산하기관의 장(이하 “시장 등”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,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·민주성·투명성·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요건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직속 기관 및 사업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“위원회”란 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시 <u>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</u>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기본원칙) ① ----- <u>직속기관 및 사업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적용범위) ----- <u>각종 법령 및 조례</u>에 의하여 시와 시 --- <u>위원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요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직속기관 및 사업소</u>-----</p> <p>-----</p>

<신 설>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9조의2(청렴서약서 제출) 위원은 심의·의결 시 별지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 (생략)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-----
-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회의록 작성 및 공개) ①·② (생략)

제10조의2(회의록 작성 및 공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소속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0조 ~ 제14조 (생략)

제15조(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)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, 이를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 (생략)

③ 위원장-----

-----.

④ -----
----- 7일 -----
-----.

⑤ 시장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라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1조 ~ 제15조 (현행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)

제16조(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) -----

----- 제14조제2항 -----
-----.

제17조 (현행 제16조와 같음)